

< 주주총회 소집통지문 >

제 17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태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 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 25 조에 의거하여 제 17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당사 정관 제 27 조에 근거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3월 27일 (금) 오전 11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46, 510 호 (시흥동, 글로벌융합센터 비타워) 본사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보고 안건》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부의 안건》

제 1 호 의안 : 제 17 기(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제 17 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 3 호 의안 : 임원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 4 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별첨 1]

*지참서류

- 1) 주주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2)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주주총회 대리인위임장 (인감도장 날인요망)

(주)노바칩스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문

인감증명서 1 통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070-8853-8555)

2026 년 3 월 6 일

주식회사 **노바칩스**
대표이사 **김 영 관** (직인생략)

[별첨 1]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노바칩스(이하 "회사"라고 한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 【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경영지원팀으로 한다.

제4조 【퇴직금의 산정】

1.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1년간 총 급여(상여금 제외)/12 x 재임연수 x 지급배수]로 한다.
2. 대표이사의 지급배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적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3배를 적용한다. 2011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3배를 적용한다.
3. 사내이사의 지급배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1배를 적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적용한다. 2011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배를 적용한다.

제5조 【퇴직연금과의 관계】

1. 회사가 임원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DC형)에 납입한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은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임원이 퇴임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연금 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3. 퇴직연금 적립금은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중복하여 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노바칩스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문

제6조 【재임연수의 계산】

1. 재임기간은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퇴임일까지로 한다.
2. 재임기간의 계산은 연 단위로 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3.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제7조 【특별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퇴임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9조 【퇴직연금제도 운영】

1. 회사는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DC형)를 운영할 수 있다.
2. 회사는 임원의 퇴직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회 임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정산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납입한 부담금은 임원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 하며, 퇴임 시 퇴직연금 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4.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한 부담금은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경과조치】

1.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2. 다만, 회사가 임원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에 이미 납입한 부담금은 본 규정에 따른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